



보호와 지원

범죄피해자구조전화 1577-1295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제3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소식지 (02) 586-1295 www.kcva.or.kr

제2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김윤옥 여사 '상처는 모래에 기록' 영상편지

'범죄피해자 사회적 권리선언' 채택



▲이용우 연합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이용우)는 2009년 10월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제2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피해자권선언을 채택했다.

피해자 권리선언제약은 지난해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탄탄한 주체임을 선언한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선언 이후 두 번째다.

6개항으로 구성된 권리선언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사회적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사회적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의료지원 받을 권리 △안전한 거처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학교와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국가와 사회에 범죄 피해에 상응하는 지원을 요구할 권리 등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인권대회에는 황희철 법무부차관과 김경우 대한변협회장, 이용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한나라당 범죄피해구제소위원회 위원장인 박민식 의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황희철 차관이 대독)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 한 아동 성범죄피해자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를 느꼈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국민들이 절실히 공감했다"며 "법무부는 이런 책임을 깊이 새겨 앞으로 피해자보호기금을 마련하는 등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합리

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영상편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은혜는 대리석에 새겨라'는 격언을 인용해 "피해자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부터 피해자지원센터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최근 '황산테러사건' 피해자를 위로방문하는 등 활발한 피해자 지원활동을 펴온 홍보대사 윤다훈씨가 법무부장관표창을 받았고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안을 발의한 박민식 의원이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감사패를 받는 등 공로자 49명이 표창을 받았다.

▲법무부장관상:주세현 성홍수 김윤옥 박서을 김보연 자심민 한선재 이윤희 전광정 배수광 오원석 전병진 전태희 최향숙 이승진 정지현 조항구 김명재 변태희 김수문 조철로 손두수 류원호 신의재 김유경 조재현 임영남 ▲법무부장관 감사패:홍보대사 윤다훈 박은혜 이나경 ▲연합회장상:이재현 문영희 최중목 강복금 정계성 우근섭 남우호 임영우 김영춘 조규남 김상구 구경생 윤준식 김요연 소순 허혜성 김성현 이원향 권복희 김형남 ▲6개월 봉사대상:유철근 정현용

한국피해자학회 2009년 추계학술회의

한국피해자학회 2009년 추계학술회의가 2009년 10월 29일 1시30분부터 6시까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Care 라는 주제로 코엑스 3층 컨퍼런스를 318호 있었다.

이번 추계학술회의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이용우) 후원한 가운데 박광민 교수(한국피해자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학술주제 발표시간을 통해 1~3주제와 종합토론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기초발제는 장규원 교수(원광

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사회로 小西 聖子 교수(日本 武・野大 인간관계학부)가 발표하고 이정민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통역으로 일본의 범죄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Care에 대한 내용으로 기조발제 했다.

제1주제는 범죄피해자 Care의 실제에 대해 심연주 부산센터 '햇살'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이동원 교수(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가 토론했다.

제2주제 사이버 공간 관련 피

해자 사례를 통해 살펴본 피해자 보호의 실제에 대해 문성원 교수(우석대학교 심리학과)가 발표, 조은경 교수(한남대학교 심리학과)가 토론했다.

제3주제 심리적 혼동과 내러티브 재구성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해소를 중심으로 최남희 교수(서울여자간호대학 간호과)가 발표하고 홍영오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0 청와대 정부부처 업무보고

KCVA 이용우 회장 법무부 정책수요자로 참석

『실효성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책』발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이용우 회장은 2009년 12월 23일 오전 8시4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0 청와대 정부부처 업무보고' 법·질서 분야 연두업무 보고에서 법무부 정책수요자로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의 안타까운 현주소를 직접 전했다.

이용우 회장은 오늘날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구조금 금액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지급이건이 까다로워 충분한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범죄피해자의 현실을 토로하며 『범죄피해자기금법

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청했다.

그리고 국가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외에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범죄 피해에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지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죄 피해를 입고 음지에서 평생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피해자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 함께 애석함을 표하며 "피해자에게 웃음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후 오찬장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용우 연합회장.

실효성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대책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연합회장 이용우: 청와대 발표문

최근에 아동성폭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범죄피해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범죄피해자들은 언론에 보도조차 되지 않는 채 상처를 혼자 감당하며 어려운 사정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처리가 피해자지원 활동을 해 보니, 가장 큰 애로점이 자원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주는 구조금은 금액도 적고 지급요건이 까다로워 피해자들이 여전히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김호순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여적이 있었지만 지급요건이 되지 않아 국가로부터는 도움을 받지 못했고, 저희로서는 유족들에게 고액 약간의 위로금을 지원 할 수 밖에 없어 국가 책무에 대하여 피해자 유족이 울분할 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센터는 자원자단체의 지원과 독자적인 기부금, 그리고 일부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자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법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하는 범죄피해자기금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성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관련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와 계신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지원을 하면서 느낀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어느 한 단체의 노력으로 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범죄피해가 개인 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공동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피해자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를 다지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매년 10월 4번째 주를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정하고 그 주간에 저희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공동주최로 범죄피해자인권대회 행사를 합니다.

특히 올해 개최되었던 제2회 범죄피해자인권대회에서 영부인님께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위로하시고 피해자 지원을 하는 사법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셔서 저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원봉사를 해온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대통령님께서 이 주간에 외국처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면 저희 피해자지원 센터는 물론이고 온 국민들이 범죄피해자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감싸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희망과 웃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 연합회 피해자 복지센터 위탁운영자 연합회 선정 금년 7월 중 운영 시작

법무부는 강력사건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각종 심리적·정신적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시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치료와 쉼터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설립·운영하기로 하고 2009년 12월 9일 자로 센터 설립 및 운영을 담당할 민간 사업자 공모절차에 착수해 사업자를 공모하였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위탁운영자에 선정하였다.

법무부는 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2010년 2월 26일 피해자 복지센터(스마일센터) 위탁운영자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협약을 맺고 응모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선정했다. 따라서 법무부와 연합회는 6월까지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어 금년 7월 중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연합회와 성모병원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계획 수립 등 업무협조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출범 제반사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운영자로 선정된 연합회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심리치료 및 재활교육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우선 하루 최대 20명을 대상으로 정신치료 및 심리치유 서비스가 실시된다. 서울성모병원 정신과장 등 정신과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팀이 주 2회 정기진찰과 약물치료 등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성모병원 또는 기타 협약병원의 협진체계를 통해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속 임상심리전문가 2명과 간호사 1명으로 구성된 심리치료팀은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월 2회 가족치료와 주 1회 음악 및 미술치료를 실시하고, 갈등치료와 음악회 관람 등 여가활동 및 심신단련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상담사 2명으로 구성된 재활 및 구직지원팀에서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피해자와 가족들의 자활을 돕는다.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한 전문 기술교육과 소규모 창업이나 취업이 가능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노동부 고용인정센터와 노사공동체 재취업센터를 통한 구직알선 서비스도 실시된다.

주거지에서 강력범죄를 당하여 범죄 장소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남·여 생활실과 가족 생활실로 구분하여 거처를 제공하고, 이곳에서 안정을 취하며 심리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와 교육을 받게 된다. 범죄현장과 단절시켜 주는 효과는 물론 숙식이 모두 제공돼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거처 역할을 하게 된다.

피해자 복지센터(스마일센터) 운영

◆사업목적

강력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상담 등을 통한 의학적 진단과 평가, 각종 심리프로그램 운영, 재활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범죄발생으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거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추진근거

- 헌법 제30조(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보조금의 교부)

◆사업내용

1. 강력사건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치료 및 교육 등 서비스제공
 - 면담조사, 피해상황 청취 및 지원방안 강구
 -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 전문적 심리상담 및 평가(필요시 전문의 치료연계)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 치료, 갈등치료, 음악·미술치료, 놀이치료, 인지행동치료 가족예기행동치료, NLP(Neuro-Linguistic Programming)심리 치료, EFT(Emotion Freedom Techniques)심리치료 등
 - 피해자 상대 범죄피해자 심리 및 회복관련 교육
 - 외부기관 강사 초빙 또는 관련기관 교육훈련 등 알선
 - 여가활동 및 심신단련 프로그램 운영
 - 음악회, 미술관 관람, 여행 등 주선
 - 범죄피해자 발굴 및 치료안내, 방문치료
 - 피해자 자조 모임 등 지원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활 구직 알선사업
 - 재활교육 및 구직 알선 사업
 - 범죄로 교육기회를 잃은 학생들에 대한 보충교육
 - 실직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활교육
 - 직업훈련기관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
 - 노동부 고용인정센터를 통한 구직 알선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생활실 운영
 - 임시숙소 제공 및 관리
 - ※ 최장 1개월(진단평가 후 필요시 연장 또는 통원치료 가능)
 - 남성실, 여성실, 가족실 등으로 구분
 - 입소자의 생활안전 보호와 피소자 가족 및 센터 인계 등 보호계획 수립
4. 피해자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전문 기그름(지원동시그름) 운영
 - 외부인사를 포함한 자체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 센터운영 관련 주요사항 자문
 -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법률가, 임상심리사, 상담전문가 등 인력을 구성
5. 센터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연구, 기록 관리
 - 센터종사자에 대한 피해자심리 및 회복관련 교육
 - 피해자 상담치유 관련 연구
 - 상담일지, 치유경과 및 결과 등 기록 및 통계관리

◆사업주체별 역할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 센터 기본운영계획 수립 - 센터 설치계획 수립 및 지원 - 센터 사업비의 교부 및 정산, 평가 - 센터 관리 감독 및 지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회(위탁운영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협약 운영 -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 피해자 보호자원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연계망 구축 - 기타 법무부장관이 피해지원과 관련 의뢰하는 사업의 운영 |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및 경제적 지원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O○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 및 재정적 지출을 요하는 생계비·학자금·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담절차 및 방법, 지원신청 절차,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설치 및 운영 및 집행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상담 등

제2조 (상담신청)

- ① 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청한다.
- ②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정도, 피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보호·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피해자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3조 (상담)

- ① 상담은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하고 있거나, 최근 2년 내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에 전문성을 갖춘 상담원이 한다.
- ② 법률, 의료상담 등 상담에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상담위원이 상담하도록 한다.
- ③ 상담은 신청인의 변경요청이 없는 한 최초 상담원이 신청인을 상담하도록 한다.
- ④ 상담원은 사법 또는 강제피해의 경우 신청인에게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절차를 대행하여 주어야 한다.
 ⑤ 상담원은 신청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제3장 경제적 지원신청 및 조사 등

제5조 (경제적 지원신청)

- ① 지원신청은 구두, 서면,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전자우편, 서면에 의한 신청이 아닌 경우 신청을 받은 간사는 제항에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등 타 기관에서 의뢰한 사건인 경우 간사는 대상자에게 전화 등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신청서는 공소장,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자의 사망 진단서, 상해진단서, 재산피해 소영자료, 소득 및 재산관계증명, 재회중명서 등 지원 대상, 규모 등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간사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조사 등)

- ①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사는 즉시 신청대장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접수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간사는 대상자에 대한 민담, 현황조사 등 지원여부 등을 결정 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하여 이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다만, 상담원은 제3조에 따른 상담을 하는 경우 제2항의 조사

를 병행하여 할 수 있다. 이 때 상담원은 조사결과를 즉시 간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지원 대상 및 기준

제7조 (지원 대상)

- ① 범죄피해자지원 대상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호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8조 (지원 기준 등)

- ① 생명·신체·재산 등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로부터 정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한 경우로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지력에 의한 피해회복이 현저히 어려운 때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O○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재정상황, 피해 정도, 경제적 형편,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등을 결정한다.
 1. 부양이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2. 기초생활수급자
 3. 소년소녀가장
 4. 무의탁 독거노인
 5. 범죄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우
 6. 기타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② 다만 범죄피해자구조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

제3차 지정기탁금 심의위원회 개최 이용우 회장 지원현황 보고 및 확대방안 모색 법무부 산하 5급 이상 공무원 급여 5% 기부

연합회 이용우 회장은 2010년 1월 28일 전국 범죄피해자 대상 기탁금 지원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제 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원 과장(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최상덕 (KCVA부회장), 고강운(KCVA운영위원), 김태완(KCVA운영위원) 그리고 박권규 간사(KCVA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연합회에 기탁된 금액은 법무부 산하 5급 이상 공무원이 월 급여에서 5%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쓰도록 기부한 것으로 연합회에서 전국 57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5대 강력범죄 피해자를 추천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생계비와 학자금, 의료비 등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엄격한 심사 기준 때문에 살인, 강도, 상해 등

5대 강력범죄피해자만을 국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과실치사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 향후 경제사정 등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안건을 다루었다.

현재 연합회 기탁금은 1차 30명에 생계·학자금·의료비지원으로 8천1백60만원, 2차 32명에 8천2백10만원, 3차 35명에 1억4백80만원, 조두순 사건 피해자에



▲이용우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500만원, 4차 33명에 9천8백80만원, 5차 34명에 8천300만원, 6차 25명에 6천6백10만원, 7차 33명에 8천900만원, 8차 32명에 9천만 원 총 256명의 범죄피해자 및 피해

자가족에 7억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수혜 대상지는 전국의 아동성폭력피해자와 강간 및 살인·중상해 피해자 등이다.

<<2면에서 계속 : 전국 센터 상담 및 경제적 지원 운영방침>>

보상보험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원의 종류는 생계비 지원, 학자금 지원 및 의료비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제5장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제6조 (설치 및 구성)

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에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③ 범죄피해자지원위원의 이사장은 심의회 위원장을 겸한다.

④ 위원은 00범죄피해자지원센터 회원 중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하되, 위원장이 선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검사, 검찰사무관 등 범죄피해자 지원 담당공무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 심의대상자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간사를 두되, 00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이를 겸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① 심의회는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여부, 방법 및 규모를 심의·결정한다.

② 심의회는 지원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의료비 지원여부 등 심의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의료전문위원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방법 및 규모)

① 생계비, 학자금, 의료비 지원금은 '별지'와 같다.

② 생계비, 학자금 지원은 정기금으로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일시 지급할 수 있다.

③ 의료비 지원은 협력병원 의료 등을 통하여 응급처치,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비 및 약제비를 협력병원 등에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방법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제12조 (간급지원)

① 심의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심의회의 심의·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급지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1개월 이내에 심의회를 열어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심의회는 이미 지원한 부분을 회수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장 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 (비밀누설의 금지) 심의회 위원, 상담원, 간사 등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의의 목적이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집행 및 보고 등

제14조 (집행)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은 심의회의 결정사항을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 위원장은 이 지침에 따른 지원내역, 심의회 회의록 등을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서류보관) 범죄피해자지원 관련서류는 00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통상의 서류에 준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17조 (개정) 이 지침의 개정은 00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한다.

제18조 (준용)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구조포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9. . .부터 시행한다.

(별지1)

1. 생계비 지원금

가. 지원금액 및 기간

① 월간 지원금액은 00만원으로 한다.

② 지원기간은 범죄피해자가 재입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6개월을 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지원기간은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6개월을 넘지 아니한다.

④ 지원금은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회에서 결정할 월간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골한 금액을 일시 지급할 수 있다.

나. 지급방법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대상자에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금 중 일부를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학자금 지원금

가. 지원대상
피해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범죄피해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상황에 이른 경우로 초·중·고등교육을 대상으로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등교육도 포함한다.

나. 지원금액 및 기간

① 분기당 00만원 범위 내에서 피해정도,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소득수준, 피교육자의 학업의지, 피교육자의 수, 지원 필요성, 00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며, 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시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지원금은 정기금으로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시 지급할 수 있다.

다. 지원방법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대상자에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록금을 직접 납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의료비 지원금

가. 지원대상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상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나. 지원금액

① 피해정도, 치료의 필요성, 피해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형편, 00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치료기간과 한도액을 정하며, 치료기간은 6개월을, 한도액은 00만원을 각 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치료기간 중에 한도액 범위 안에서 발생한 실제 치료비만을 대상으로 하며, 일시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기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서 정한 치료기간과 한도액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기간 및 한도액은 갱신할 때마다 6개월 및 00만원을 넘지 아니한다.

다. 지원방법

① 협력병원에 진료를 의뢰한다. 단, 대상자가 이미 진료를 받고 있는 종이라면 해당 의료기관을 치료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서 정한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치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원 등에 직접 수납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1.첨부분별 별지, 2.종 센터의 사정에 맞게 선별적으로 채택함.
- 2.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지침을 상당부분 참조함
- 3.보건복지가족부(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기하여 해당 보건복지가족부고시로 발령하는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피해정도, 피해지 및 그 가족의 소득수준, 생활 여건, 지원 필요성, 00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필요한 경우 미리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단계별 지원금액 기준표 를 만들 수도 있음

(별지2) 1. 생계비 지원금 가. 심사기준

항목수	직종범위	기 준
A	가족수	2명 피해자가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결정 (0인:0%, 1인:10%, 2인:18%, 3인:28%, 4인 이상:29%) 가구 월수입 한계에 따라 결정 ¹⁾
B	생활능력	2000원이상:3%, 1500원이상2000원이미만:10%, 1000원이상1500원이미만:29%, 1000원이미만 :29% 가구 재산정도에 따라 결정 ¹⁾
C	재산	1억원이내5,000만원이상:15%, 5,000만원 미만:29%
D	피해정도	대상사건의 경우: 전단기간(주)20%, 사망:25% 하 회 재산비례의 경우는 피해액수를 감안하여 결정
합계	100%	

나. 지원금액
가량의 심사기준에 따라 나온 합계에 000만원을 골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한다.

2. 학자금 지원금 가. 지원기준 및 금액 나. 지원방법

기 준	지원회수 ¹⁾	월당 지원금액	비 고
초·중학생	1-2회	30만원	사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중·고등학생	1-2회	50만원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대상자에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록금을 직접 납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의료비 지원금 가. 지원대상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상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나. 지원금액 및 회수

구 분	정신치료	기타 신체치료	지원한도	비 고
사망후 유족	1회-6회	1회-3회 ¹⁾	00만원	사정에 따라
상해피해자	1회-6회	1회-6회	00만원	추가로 지급
상해피해자 가족	1회-6회	1회-3회 ¹⁾	00만원	할 수 있음

- 1.별지 이후의 가구 월소득액임
- 2.별지 이후의 가구 재산월도임
- 3.단 2%를 넘지 아니한다.
- 4.초차지원금
- 5.예: 피해자의 부양가족2인, 가구 월수입 120만원, 가구 재산액 7,000만원, 상해정도 6중, 초차지원금이 300만원인 경우 (15%+ 20%+15%+12%)x300만원 가 되어 지원금은 186만원이 된다.
- 6.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간격으로 지급함
- 7.단, 치료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8.단, 치료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전국 교정 6급 승진 공무원 112명 교육

이용우 연합회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의

"교정 담당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의 중요성" 강조



▲이용우 회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전국범죄피해지지원연합회 이용우 회장은 2010년 3월 10일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서 교정6급 승진 공무원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과목을 강의했다.

이번 교육은 교위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는 6급 공무원 대상으로 2월18일부터 4월 9일까지 8주 동안 진행되는 기본 과정으로 교정공무원의 실무적 업무 향상을 위

한 기본교육과정 I ▲규율위반차 처리 실제 ▲사고사례 실무 ▲교정현장 상담기법 ▲조사 실무 ▲정보공개처리 ▲당직근무 실무 ▲교정과 인권 ▲형사소송절차의 이해 ▲감동관리 스킬 ▲전연병 예방과 관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이론 교육과 기본교육과정 II ▲체포호신술 ▲유도 ▲태권도 ▲검도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용우 회장은 이번 교육에서 물지마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로 인해 피해를 겪은 범죄피해자의 사례를 들면서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주위로 부터 외면당하여 막막한 현실을 감내해야 하는 피해자들의 외로운 현실을 알리고, 피해자가 대면해야 하는 사회적, 환경적 변화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범죄피해지지원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우 회장은 범죄 피해 후 피해자의 보호·지원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 차원에서 재범이 발생되지 않도록 범죄자의 심리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출소 후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 등 교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을 마치면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지원봉사자의 실질적인 역할과 센터의 피해지지원시스템 등에 관련하여 교육 참가자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그리고 피해자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연합회 이용우 회장을 비롯한 전국 센터의 업무 종사자들의 열정이 담긴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관심 갖지 못했던 범죄피해자가 겪는 힘든 현실에 그 안타까움이 매우 크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피해자들을 위해 활발한 보호·지원 활동을 부탁한다는 격려의 말도 전했다.

이번 교육 인원은 총 112명으로 평균 재직 20년 이상의 교정직 공무원이 참가했다.

검찰청·자치단체 『범죄피해자 실무 담당관 교육』

이용우 회장, 전국센터 현황 및 지원 사례 강의

2009년 11월 19일 이용우 연합회장은 검찰청·자치단체 범죄피해자 업무 담당자 교육에서 『범죄피해지지원센터 현황 및 지원 사례』교육 과목을 강의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검찰청·지청 범죄피해자 담당관 및 관역자치단체 범죄피해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다 심화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이해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해 실시되었다.

강의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자를 위한정부정책 (김현철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범죄피해자의 이해와 보호(오경식 강릉대 교수 피해자학회 편집위원), ▲범죄피해지지원센터 현황 및 지원사례(이용우 전국범죄피해지지원연합회 회장), ▲범죄피해자

지원 담당자를 위한 업무매뉴얼 (안희준법무부 인권구조과 검사), ▲형사조정제도 발전과 실무(송길형 형사법통합정보체계 추진단 단장), ▲범죄피해자와 인권(김주원 대검 피해자 인권과장), ▲범죄유형별 피해자 상담기법(구본용 강남대 교육대학원 원장), ▲범죄피해사례 영상 『범죄피해, 그후』, 『제2회 한국범죄



▲이용우 회장이 지원사례 등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피해자인권대회』등 10시간에 걸쳐 8개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이용우 전국 연합회장

전국센터 자원봉사자 대상 3, 4차 교육과정

'센터의 현황과 자원봉사자의 역할' 강의

2010년 1~4차 이수자대상 심화과정 예정



▲이용우 회장이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이용우 전국범죄피해지지원연합회장은 전국센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3차(11월 23일~25일), 4차 교육과정(11월 30일~12월 2일)에서 첫 날 첫 시간에 '범죄피해지지원센터의 현황과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해 2시간 동안 강의했다.

연합회는 실무중심의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범죄피해자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확대 등에 기여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용우 회장은 이번 강의에서 영상자료를 통해 추적60분 뉴스 후 등에 보도된 강호순 사건, 새 청 조두순 사건 등을 되짚어보고 범죄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 사고 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대로 설명하며 막중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리고 각 센터 특성에 맞는 범죄피해지지원 행사를 소개하고 각 센터끼리 서로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이 회장은 자원봉사자들이 범죄피해자 가정을 방문하는 1:1결연을 맺어 상담을 통해 범죄피해자 현황을 잘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해 봉사대상을 비롯 포상이 주어진다고 설명하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내년 부터 실시하는 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자격증이 부여된다.

이외에도 홍보를 통한 범죄피해자 및 후원자 발굴, 법률지원, 의료지원, 환경지원 및 범죄피해 현장청소 지원이 주된 임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10년에는 기초과정 이수자(1,2,3,4차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심화과정 개설 예정이다.

한성CC · KCVA 자선골프대회 개최

수익금 전액 5천만원 이용우 회장에 기탁 일부 부산여중생 피해자 유족에 지원 예정



▲이용우 회장과 강대규 한성컨트리클럽 회장이 여자골퍼 등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성컨트리클럽(대표이사 회장 강대규)은 2010년 3월 14일 이번 자선골프대회를 한국여자 스타트하우스 OPEN 기념 자선골프대회로 개최했다. 이번 자선골프대회는 한국여자 프로골프협회 TOP 프로 유소연 외 10명의 프로선수가 동참하여, 범죄피해자기금미련을 위해 참석한 회원 260명과 함께 27홀 동



▲강대규 회장이 박관규 범죄연합회 사무국장에게 5천만 원을 기탁하고 있다.

반 경기를 하는 샷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성컨트리클럽은 이날 대회 수익금 전액과 기부금(한성CC, 경기위원 및 관계자들이 지원한 기부금) 5,000만 원을 범죄피해자들의 보호·지원을 위해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이용우)에 기탁하였다. 자선골프대회에서 기탁받은 금액은 범죄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생

계비, 치료비 및 학자금 등으로 모두 지원한다. 지난 달 은 국민에게 분노와 충격을 주었던 부산 여중생 강간·살인사건(피의자 김길태) 피해자 유족에게도 이번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기부받은 금액 일부와 센터 모금, 법무부 검찰 공무원 급여반납 기탁금, 법무부 교정국(교도소) 수형자 후원금 등으로 3,700만원을 마련하여 위로 및 생계비로 전달하였다.

제4기 전국 형사조정위원회 1, 2차 전문교육

법무부 인권국 이대 회복적사법센터 공동주관 실질적 효과적인 화해 조정의 시너지효과 기대

제4기 전국 형사조정위원회 1, 2차 전문교육이 2009년 11월 12일과 25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있었다. 법무부 인권국과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회복적사법센터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전국에서 모인 200여명의 형사조정위원들이 참석, 오전 9시2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교육이 이뤄졌다. 이날 인권국장의 인사말을 시

작으로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가 형사조정 당사자의 심리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법에서의 갈등조정 ▲김주원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이 형사조정 이론 ▲허경호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조정의 기술-플레이 중심으로 ▲이용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이 형사조정 실무 ▲이동원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형사조정 실태

와 조정위원의 역할에 대해 각각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형사조정이 검찰로 이관됨에 따라 슬럼프는 가운데 이용우 전국연합회장 강의시간에는 여러 지역 센터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느라 시간이 초과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회장은 "형사조정이 검찰로 넘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며 센터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고 형사조정위원들은 지금



▲이용우 전국연합회장이 강의하고 있다.

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조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형사조정위원 교육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의 실질적 업무와 역할, 형사조정성립

을 위한 기술 등의 전문화 교육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화해와 조정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 여중생 강간살인 사건(피의자 김길태) 연합회 및 부산센터 다각적으로 피해자유족 지원



▲피해자 유족에게 지원금을 전달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검찰 범죄피해자구조금 2000만원 지급 예정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이용우)와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구정희)는 부산여중생 강간 살인 사건(피의자 김길태) 피해자유족에게 3,80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정신과적 치료를 지원했다. 부산센터는 사건발생 이후 피해자유족에게 법률적인 지원 등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 오펜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지원하였다.

연합회는 사건 소식을 접하자마자 20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피의자 김길태가 구속기소된 다음 날인 4월 8일 피해자유족에게 3,50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지원금은 자신 모금과 전국 센터 모금, 법무부·검찰공무원 급여반납 기탁금, 법무부 교정국(교도소) 수형자 후원금 등으로 마련되었다. 한편 검찰에서는 지원금 외에 범죄피해자구조금 2,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귀남 장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모금회 통해 기부와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 기대”

1대 1 결연 ‘사랑의 손잡기 운동’ 작년부터 시행중

법무부가 작년 한 해 동안 직원들의 자발적인 보수 반납·기부를 통해 소외계층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병철)로부터 2010년 3월 18일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해 법무부가 기부한 금액은 약 22억 4천여만 원.

이 기부금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 가족에게도 지원되었다고 한다.

이귀남 장관은 이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윤병철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의 경우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곤궁해지는 사례가 많이 있으나 국가의 예산지원이 충분치 못하다”고 하면서, “범죄피해로 인해 어려워진 이웃들에 대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본부와 산하 기관의 각 부서가 형편이 어려운 가정과 1대 1 결연을 맺고 지원하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귀남 장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윤병철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따뜻한 이귀남 장관 도배의 달인?!



▲이귀남 장관이 도배작업을 하고 있다.

사회봉사비행경대상자가 범죄피해자의 집 도배

한 순간의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봉사명령 대상자는 독거노인이나 불우아동 등 도움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죄 값을 받고 자신을 성찰해 나간다. 이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2009년 12월 17일, 신림동의 한 작은 집에 모였다. 범죄 피해자의 집을 도배하기 위해서였다.

도배를 하기 위해 모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도배 전문가들은 서울 관악구 신림 3동의 어느 반 지하 단칸방에서 간경화로 직업이 없는 남편, 정신지체 3급인 중학생 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어려운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는 범죄피해자 김모씨(51세, 주부)를 만날 수 있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자신이 직접 김모씨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를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 어느 때 보다 더 열심히 도배를 했다. 범죄피해자 김모씨도 열심히 도배를 하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었다.

따뜻한 이귀남 장관, 참회와 용서의장으로 도배봉사미션

이날 도배 봉사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함께 참여했다. 체육복에 운동화 차림의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장관으로서의 권위는 간데없고, 아마 위로 흐르는 땀을 연신 훔치며 벽지를 붙이느라 여념이 없었다.

처음 하는 도배지만, 비뚤어지거나 구김 없이 척척 해나가는 이귀남 장관의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다. 장관님은 “이참에 전직해도 될까요?” 하면서 너털웃음을 지었다.

이귀남 장관이 도배봉사를 하게 된 피해자 김모씨는, 지난 2007년 주점을 운영하던 중 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한 가해자(징역4년 선고, 현재 복역중)로부터 과도하게 찢려 전직6주의 상해를 입고, 호흡기관 등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루이침에 생계수단을 잃고 실의와 절망에 빠져있던 김모씨는 이번 도배봉사 현장을 목격하며 지켜보다가 “가래지는 조그마한 실수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은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잘못을 뉘우쳐 다시는 세상에 빛을 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줄줄이 계속되는 도배 봉사 릴레이!!

한편, 하루 앞선 어제 오후에는 황희철 법무부차관과 직원들이 관악구 신림5동에 있는 범죄피해자 윤모씨(50세)의 가정을 찾아 벽지와 장관 교체 봉사활동을 벌였다. 법무부는 12월 18일까지 각 실국 본부별로 서울시에 8곳의 범죄피해자 가정을 찾아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들과 함께 봉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귀남 장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 가정”과 “사회봉사 명령의 집행”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가 참회와 용서의 시간을 가짐과 더불어 사회봉사명령 집행으로 인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이는 아이디어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대상 범죄피해자 가정을 추가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직접 보고, 느끼도록 함으로써 사회봉사로 인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간담회

본래적 기능과 임무, 지원체계 구축안 등 주제발표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 '센터 발전방향과 지원' 논의도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이사장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대검찰청 김준규 검찰총장은 2층 베리타스홀에서 전국 57개 2009년 12월 9일 대검찰청 DFC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들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찰총장간담회에 앞서 조영곤 강력부장은 그동안 각 센터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물신양면으로 애써주신 전국 이사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피해자보호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마음 든든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짜임새 있고 내실화된 법안으로의 성정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관련단체의 성격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자생능력을 키워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센터별 이사장들의 주제 발표 및 함께 질의와 답변

의 지정토론이 마련되었는데, ▲중앙센터 이용우 이사장의『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본래적 기능과 임무』라는 주제 발표 후 부산센터 구정희 이사장, 광주센터 이사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고, 이어 ▲평택안성센터 배수광 이사장의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안』이란 주제 발표에 이어 인천센터와 대전센터 이사장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끝으로 ▲안산시흥광명센터 조시영 이사장의『일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례 발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찰총장 주재 특별간담회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형사절

차상 나타나지 않는 피해자나, 고소·고발에 의하지 않는 피해자가 소외되고, 이보다 더 어렵고 피해호소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이제부터는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찰총장은 일본 방문시 직접 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배우고 느낀 것이 전문성과 재원확보였다며 “우리도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보호·지원에 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4회범죄피해자연구회세미나

증인보호프로그램 도입 위한 법령정비방안 주제

제4회범죄피해자연구회세미나가 2009년 12월 16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2층 베리타스 홀에서 증인보호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법령정비방안이라는 주제로 있었다.

최은정 수원지검 검사가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영곤 강력부장, 김주원

피해자인권과장, 김현철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박광민 성대 교수, 이승호 건대 교수, 조균석 이대 교수, 이용우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장, 이영훈 법원행정처 판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등 50명이 참석해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대신하며 열띤 분위기가운데 진행되었다.



▲범죄피해자연구회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대검 강력부

전국 일선청에 범죄현장 정리장비 배포

피해자 원상회복 지원 강화에 쓰여져



▲피해자를 대신하여 범죄피해 현장을 청소하고 있다.

대검찰청 강력부(검사장 조영곤)는 2009년 10월 26일부터 전국 57개청에 방재복·방재장갑·방재신발커버·청소도구·장비함 등 범죄현장 정리장비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원상회복 지

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선 검찰청은 해당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강력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지급받은 현장정리 장비를 활용하여 피로 얼룩진 범죄 현장 또는 가제도구를 청소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피해자 원상회복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범죄현장청소 및 병원후송 등 정리지원 실적을 보면 2008년 42건, 2009년(1~9월) 32건에 이른다.

배포된 범죄현장 방재장비 방재복·방재장갑·방재신발커버 각 1,500세트, 청소도구 마포대 150개, 마포걸레·손걸레 등 각

1,320세트, 장비함 75개 등으로 약 2,000만원이 소요됐다고 했다.

범죄현장 정리장비 배포 경위로는 근대 연쇄살인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그 현장은 피해자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지만, 체계적 정리시스템이 없어 그간 피해자측이 개별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단편적으로 강력범죄 현장에서 혈흔을 제거하고 가제도구를 닦거나 환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현장정리를 시작하였으나, 장비 없이 청소하다가 옷이 오염되거나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예로

가 있었다.

이에,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2008년부터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신속하고 평온하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현장 정리 및 피해자 병원후송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 오는 한편,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범죄현장 정리장비를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2009. 1. 5. 방재복·안전장화 등 범죄현장 정리장비를 1차로 배포한 바 있다.

향후 계획으로 2차에 걸친 범죄현장 정리장비 제공을 기회로 범죄현장 정리 활동을 강화해 피해자의 원상회복에 진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부인 김윤옥 여사 편지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이용우회장님을 비롯한 7,000여명의 범죄피해지원센터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맞는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범죄 피해자들을 온 정성을 다하여 도와주셨기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딛고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범죄피해를 당한 여자 어린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손자손녀가 여섯이 있습니다만, 내 손녀 같은 아이가 평생 씻기 힘든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상조차 하기 싫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소홀히 되어왔던 범죄피해 가족들을 돕는 일에 우리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예방이 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면, 범죄피해자 지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의료나 법률 등 전문지식을 나눠주고 많은 사랑과 정성 그리고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피해자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사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따뜻한 사회'일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환한 웃음을 되돌려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은혜는 대리석에 새겨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픈 과거의 상처가 마치 모래 위에 쓴 글씨처럼 하루빨리 말끔히 닦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리석에 새겨진 사랑과 봉사의 은혜가 널리 전파되어, 온 세상에 희망이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0. 29

대통령부인 **김윤옥**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범죄피해자 구호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1295

"작은 나눔의 시작이 사랑입니다"



KCVA 기부 참여

- 문의전화 : 02-586-1295
- 계좌번호 : 1577-129595 (기업은행)
- 예금주 : 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